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펀드명	가입일자	연납입액	소득공제 대상금액
FGF 은행 (201-81-68***)	85475501122320	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	2014-04-08	2,200,000	880,000
YES은행 (202-81-00***)	250084183497	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 제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종류C	2014-04-30	6,000,000	2,400,000

- 1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'15.12.31.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(최고 240만원)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(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)
- ※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- 2. 가입요건 :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 - ※ 소득공제 배제 :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- 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・이자・배당・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아니함

일련번호: 20191219-011814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벤처기업투자신탁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투자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투자금액 명세 (단위:원)

납입연도	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투자신탁명	투자금액 계
2019	JM 은행(주) (104-86-39***)	54655500058433	A투자증권	3,000,000
2019	(주) NN은행 (202-81-14***)	21489006443313	B투자증권	9,000,000

-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, 투자금액의 10%(종합소득 금액의 50%한도)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(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)

일련번호: 20191219-011814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벤처기업투자신탁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투자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길동	750101-*****	

■ 투자금액 명세 (단위:원)

납입연도	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투자신탁명	투자금액 계
2018	JM 은행(주) (104-86-39***)	54655500058433	A투자증권	2,000,000
2018	(주) NN은행 (202-81-14***)	21489006443313	B투자증권	9,000,000

-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, 투자금액의 10%(종합소득 금액의 50%한도)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(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)

일련번호: 20191219-011814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